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8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김남근 · 김우영 · 김영배
박정현 · 박용갑 · 민병덕
박홍배 · 염태영 · 김 윤
오기형 · 김태선 · 박민규
임오경 · 김현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 나.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제12항·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 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 라. 조합장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 마.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외에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 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9조제4항, 제119조제5항).

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제3항).

아.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기록
을 보관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본문 중 “3분의 2”를 “100분의 60”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으로 한다.

제2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는 시공자로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을 ““추진위원회”로,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조합임원””으로 한다.

②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출 자

2.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분의 3”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후단의 거주 또는 영업에 관한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1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를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조합장은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6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하며, 이 경우 해당 대표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제41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임으로 한정한다), 제1항제9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

제101조의9제1항 전단 중 “3분의 2”를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제36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1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라 한다)을 저장·관리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및 동의에 관한 전자적 기록
2.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전자적 기록
3. 제45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저장·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화번호의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그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 중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을 “녹음·영상자료 또는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전자적 기록(이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19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4항에 따른 등록·보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10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총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거나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구획공사등(토지구획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 -----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u>3분의 2</u>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u>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u> .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	8. ----- ----- ----- <u>100분의 60</u> ----- ----- ----- <u>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u> ----- -----. ----- -----

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 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 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 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 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② ~ ⑤ (생략)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 정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 정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 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는 시 공자로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u>
<u><신설></u>	<u>⑬ 제12항에 따른 공사비 산출 을 위한 내역서에 포함되는 내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생략) <u><신설></u>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u>②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한</u>

② ~ ④ (생략)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략)	<u>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u> <u>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u> <u>2.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 ---. ----- “추진위원회”로,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조합임원”----- ----- -----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⑩ (생략)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 ⑥ (생략)

<신설>

② -----

100분의 70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후단의 거주 또는 영업에 관한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생략)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생략)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 ⑤ (생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	2.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제41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은 제외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조합장은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 ----- -----
---	--

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

③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6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전·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의 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⑤ (생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가 소집하며, 이 경우 해당 대표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⑦ 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제41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임으로 한정한다), 제1항제9호 ----. -----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생략)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44조제8항 -----

-----.

-----.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

----- 100분의 60 -----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제36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 --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전
자적 의사결정 기록(이하 “전자
적 의사결정 기록”이라 한다)을
저장·관리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
명동의서 및 동의에 관한 전
자적 기록

2.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전
자적 기록

3. 제45조제6항 및 제8항에 따
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의
사결정 기록을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저
장·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② (생략)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u>주민등록번호</u> 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u> ----- ----- --. <u>다만, 전화번호의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그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 ----- ----- ----- ----- ----- ----- -----

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
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
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녹음·영상자료 또는 전
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전자
적 기록(이하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
정 기록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19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
업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방
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
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4항에 따른 등
록·보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 8. (생략)	제136조(벌칙) ----- ----- ----- -----.
제1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③ (생략)	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